

2025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수입등록·검사 -

- 지원대상 : **한국 농식품** 수출(예정)업체
 -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 (단,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)
 - * 벤처, 창업,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(선순위 지원)
-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
 - * 공산품, 수산식품 지원 제외
 - * **한 번(1개 신청서)에 1개 국가,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**,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
- 신청기간 : 수시접수(모집공고 게시일 ~ 11월)
 - *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- 신청방법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> 사업신청 >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
 - * **제출서류는 [신청]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**
 - *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
- 지원한도 :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*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
 - * 수입등록·검사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, 라벨링 현지화, 지적재산권 지원금액 합산
 - *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
-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	지원비율
수입 등록	○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(갱신)·검사비 지원		80%
	수출업체	중국 해외생산기업·제품 등록, US FDA 제조시설 등록	
	바이어	인도네시아 식약처(BPOM), 베트남 식약처(VFA), 태국 식약처(FDA),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의청(DVS), 러시아 체스니즈낙 등록 등 (등록 관련 식품검사비 포함)	
식품 검사	○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		80%
	수출업체	카타르, 이라크 식품 적합성 인증(CoC) 관련 식품검사비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식품검사비 * 검역강화 조치 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내용 추가·변경 가능	
	바이어	현지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 * 바이어가 식품검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사전 동의 필요(신청서 날인) * 현지 검역조치 변동사항에 따라 지원내용 추가·변경 가능	

- * 위 명시된 내용만 현지화사업의 지원대상이며, **국내 식품검사비(잔류농약, 식품위생 검사)**는 “**안전성 검사 사업**”으로 지원 가능(국내 식품검사비 지원 담당부서 061-931-0834)
- * 바이어는 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고, 관할 국가의 aT 해외지사로 직접 신청
- 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< 유의사항 >

- 중국 해외생산기업,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은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, **직접 등록하시면,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** (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대행비(수수료)입니다.)
 - **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** : kati.net-자료-보고서-이슈별조사-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매뉴얼
 - **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방법** : kati.net-자료-보고서-외부발간보고서-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
-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, 아래 18가지 식품유형은 현지화지원사업으로 **지원이 불가합니다.**
아래 식품유형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(043-719-2037, 2033)로 등록절차 문의

육류 및 육계조제품	케이싱	수산물
유제품	제비집 및 제비집제조품	벌꿀
계란 및 계란 제품	식용유지 및 유지원료	소(餡) 함유 밀가루식품
식용곡물	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	신선·탈수 채소 및 건조 대두
조미료	견과와 씨앗류	견과
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(콩)과 코코아	특수식이식품	보건식품(건강기능식품)